

### 3. 부설연구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각 연구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연구소에 적용한다.

**제3조(구분)** 연구소는 그 관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교부설연구소”는 본교 설립목적 및 정책관련분야의 연구소로 한다.
2. “일반 부설연구소”는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설치되는 연구소나 학과의 학술진흥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두는 연구소 또는 한시적인 연구소로 한다.

**제4조(설치신청)**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규정(안)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설립 후 2년간의 재정계획서교원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
5. 연구에 필요한 인력, 공간 및 시설개요서

**제5조(설치승인 및 해산)**

- ① 연구소의 설치에 교수회의 심의와 총장이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② 일반 부설 연구소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설치기간 동안의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구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6조(규정)** 연구소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재정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제7조(기관의 장)**

-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해당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학교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일반 연구소의 장은 교무회의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8조(연구원)**

-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 2. 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구분한다. 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 방침에 따라 임용한다.
- ③ 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④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⑤ 본교 전임교원의 참여 연구소는 3곳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연구원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행정지원부서)**

- ① 연구소의 행정업무는 당해 연구소가 담당한다.
- ② 관리부서는 교무처로 한다.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의 연구지원금,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현금출납)**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사업계획)**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및 연구보조금)** 총장은 연구소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산)**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기간을 연장 받지 못한 연구소는 당해 연구소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당해 연구소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9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 각 연구소의 장은 본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연구소의 규정을 본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